

사이버대학의 운영수익(제7조제4항 관련)

구 분		내 용
1. 등록금 수입	가. 등록금 수입	· 입학금(신입생·편입생 등의 입학금) · 수업료(학부, 대학원, 1년 이상 교육과정의 수업료,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) · 기성회비(학부, 대학원, 1년 이상 교육과정 등의 기성회비)
	나. 수강료 수입	· 시간제등록생 수강료 수입 · 교육기간 1년 미만인 특별강좌의 수강료 수입
2. 전입 및 기부 수입	가. 전입금 수입	1) 법인 전입금 · 경상비 전입금(법인으로부터 인건비, 관리운영비, 연구비 등의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) · 법정부담 전입금(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금·의료보험 등의 법정부담금으로 받는 전입금) · 자산 전입금[법인으로부터 토지·건물·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과 같이 자본(자산)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]
		2) 기타 전입금 · 특별회계 전입금(특별회계 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입금) · 교내 전입금[교내 다른 회계조직(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으로부터 받는 전입금]
	나. 기부금 수입	· 일반기부금(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일반기부금) · 지정기부금(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) · 연구기부금(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·개발목적으로 받는 기부금) · 현물기부금(기증받은 토지·건축물·실험기자재·유물 등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)
	다. 국고보조금 수입	· 시설·설비보조(시설 및 설비의 확충을 위한 보조금) · 도서관 보조(도서관의 관리 및 확충을 위한 보조금) · 자구노력지원(자구노력지원을 위한 보조금) · 기타 보조금(기타 국고보조금)
3. 교육 부대 수입	가. 입시수수료 수입	· 입학원서대(입학원서 판매대금) · 수험료(입시지원자로부터 받는 수험료 수입)
	나. 증명·사용료 수입	· 증명료(졸업증명서 등 증명을 발급하고 받는 각종 수수료 수입) · 대여·사용료(강당, 교실, 기계·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빌려주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,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)
	다. 기타 교육 부대수입	· 논문심사료 수입(학생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료 수입) · 실습수입(실험·실습 등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의 매각수입 또는 용역수입) · 기타 교육부대수입
4. 교육외	가. 예금이자 수입	· 예금이자[각종 예금의 이자 수입(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의 이

수입		자수입을 포함한다)]
	나. 기타 교육외 수입	• 잡수입(연구간접비·위약금·보험금수입 등 잡수입과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수입) • 외화환산이익(외화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) • 외환차익(회수 및 상환에 따른 이익, 외화자산의 회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금액 및 외화부채의 상환액이 장부가액을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금액) •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(투자유가증권의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) •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환입(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전기의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 상승차액을 기중에 설정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충당금 계정에서 취득원가 범위에서 환입한 금액) • 고정자산처분이익(고정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)